

의안번호	2213722
의 퇴 인	김상훈의원
회 답 일	2025.12.4.
추계번호	25D5703

사이버안보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)	정부는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	의무규정
2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	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	의무규정
3	안 제7조(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)	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하고, 위원회에 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	의무규정
4	안 제8조(국가사이버안보센터)	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	의무규정
5	안 제9조(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	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책임 기관, 외국의 정보·보안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 구축	재량규정
6	안 제10조(통합보안관제체계의 구축 등)	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,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·운영	의무규정
7	안 제11조(정보의 공유)	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·운영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예방·대응활동)	책임기관은 소관사무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·대응활동을 수행 - 사이버보안 점검·훈련 실시 - 안전한 정보통신기기의 도입 및 활용 - 사이버공격·위협 탐지, 정보공유, 사고신고 등 체계의 구축·운영 - 전문인력 확보 및 직무교육 실시	의무규정
9	안 제13조(사이버피해 조사 등)	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	의무규정
10	안 제15조(사이버위기대책본부)	정부는 사이버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	재량규정
11	안 제17조(사이버안보 실태 평가)	국가정보원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2	안 제18조(국제협력)	정부는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외국의 정부,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- 사이버안보를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- 사이버안보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공동대응 -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의 상호간 파견교육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	
3	안 제7조(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)	
4	안 제8조(국가사이버안보센터)	
5	안 제9조(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	
6	안 제10조(통합보안관제체계의 구축 등)	
7	안 제11조(정보의 공유)	
8	안 제12조(예방·대응활동)	
9	안 제13조(사이버피해 조사 등)	
10	안 제15조(사이버위기대책본부)	
11	안 제17조(사이버안보 실태 평가)	
12	안 제18조(국제협력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현재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(대통령훈령)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임
-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다음의 표와 같이 현재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(대통령훈령)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[표] 제정안과 현행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 비교

현행 「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」	제정안
제9조(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·시행 등)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함	안 제5조(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- 정부는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
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-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
	안 제7조(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) -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하고, 위원회에 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함)을 설치
제4조(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)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	안 제12조(예방·대응활동) - 책임기관은 소관사무 영역에 대하여 예방·대응활동을 수행
제8조(국가사이버안전센터) -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 -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업무를 수행	안 제8조(국가사이버안보센터) -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
	안 제9조(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-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책임기관, 외국의 정보·보안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정보협력체계 구축
제10조의2(보안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)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·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설치·운영함	안 제10조(통합보안관제체계의 구축 등) -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,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영역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·운영
제14조(전문기관간 협력) -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	안 제11조(정보의 공유) -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·운영

유체계를 구축·운영	
제13조(사고조사 및 처리) -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 실시 - 경미한 사고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-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피해가 심각하거나 주의 수준 이상의 정보가 발령된 경우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함	안 제13조(사이버피해 조사 등) -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
제9조(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·시행 등) -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 권고	안 제15조(사이버위기대책본부) - 정부는 사이버위기 정보가 발령된 경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
	안 제17조(사이버안보 실태 평가) - 국가정보원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제정안에 따라 현재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 업무가 국가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다만, 현재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사업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, 추가·확대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